

대구지방법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단1254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최종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7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)에 관하여 2020. 2. 26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2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11544호로써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D,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8323 구상금청구사건을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9. 12. 13. “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,685,810원과 그 중 38,635,150원에 대하여는 2017. 9. 1.부터, 21,050,660원에 대하여는 2019. 9. 12.부터 각 2019. 12. 1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

나. C은 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26. 매매예약(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함)을 원인으로 2020. 3. 2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11544호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증거] 갑 제1, 2호증의 기재

2.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예약은 통모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판단

(1)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,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

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,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).

(2)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은 C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, C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,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예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,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(가)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E의 소유였다. 별지 목록 1, 2 기재 부동산은 E이 이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F사라는 개인사찰의 소유로서 승려들이 수행하는 토굴(작은 규모의 암자 등 건물을 지칭하는 말)로 사용되고 있었다. 피고는 출가한 비구니로 자신의 수행처로 삼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E과 매매대금을 9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(나) 피고는 2017. 9. 18. 자신의 아들인 G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대금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. 그런데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자 피고는 함께 수행하는 비구니인 C 명의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하여 E의 동의를 받아 2018. 1. 4. 이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 이후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이 사건 예약을 하고, 가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증거]을 제1 내지 8호증, 증인 E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결론

원고 청구 기각

판사 김형한

별지